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5 컨셉코리아 패션쇼 개최 지원 ○ 사업목적 :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통한 K-패션 인지도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협약기간)(안)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시즌별(S/S, F/W) 단독/연합 패션쇼 개최 및 국내외 비즈니스,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S/S, 2026 F/W 파리패션위크 여성복 시즌 기준 ○ 지원규모 : 3개 브랜드(단독, 연합) ○ 지원대상 : 국내 디자이너패션 브랜드(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 디자이너패션 브랜드(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로 디자이너가 업체의 대표(공동대표)여야 함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이나 잡화, 소재 관련 기업 제외 ② 4시즌 이상 컬렉션 제작 및 국내외 세일즈 경험이 있는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룩북, 라인 시트, 연도별 매출/수출실적 확인 가능 서류로 증빙 ③ 1회 이상 자체 패션쇼 개최 경험이 있는 브랜드 ④ (단독) 2024년 매출 10억 원 이상인 브랜드 / (연합) 2024년 매출 3억 원 이상인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매출/수출실적 확인 가능 서류로 증빙 가능해야 함 - 수출 실적 필수 포함(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 ⑥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브랜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04.29.(화) ~ 05.20.(화) 11:00 AM ○ 접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 제출서류 : 아래 9개 자료를 1개의 폴더로 압축(ZIP)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 브랜드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문 사업신청서 (HWP) - (ex. 01 사업신청서_브랜드명) ② 영문 사업신청서 (HWP) - (ex. 02 사업신청서_브랜드명) ③ 국문 브랜드 PR자료 (PDF) - (ex. 03 브랜드 PR자료_브랜드명) ④ 영문 브랜드 PR자료 (PDF) - (ex. 04 브랜드 PR자료_브랜드명) ⑤ 최근 4시즌 룩북(PDF) - 시즌별로 파일 구분 (ex. 05 룩북_2025SS_브랜드명) ⑥ 2024년 매출 실적 증빙 - (ex. 06 매출실적 증빙_브랜드명) ⑦ 사업자등록증 (PDF) - (ex. 07 사업자등록증_브랜드명) ⑧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XLS) - (ex. 08 이해관계자리스트_브랜드명)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 (ex. 09 동의서_브랜드명) <p>※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p>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절차 : 1단계 국내(30%)+2단계 해외(70%)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국내는 서류 및 발표 통합평가이며, 2단계 해외는 서류평가로 진행(필요시 ZOOM 평가) - 접수 결과 지원 규모의 5배수 이상인 경우 1단계 평가를 1-1 서류, 2-1 발표 2단계로 분리하여 평가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2단계 평가를 화상 발표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ZOOM 활용) - 단계별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 국내외 전문가로 별도 구성 - 1단계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2단계는 전체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평균으로 산출 - 단계별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 - 선정 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 예정 	

○ 평가기준

- 1차 : 사업이해도(10), 브랜드 경쟁력(25), 세일즈 전략(30), 글로벌 홍보 계획(25), 소통역량(10)
- 2차 : 시장적합성(30), 세일즈가능성(25),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역량(25), 글로벌 홍보 확산가능성(20)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음악패션산업팀 윤서현 대리 (☎061-900-6451, yoon@kocca.kr)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IDC 박병우 차장 (☎061-900-6089)

콘텐츠금융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